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이효원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567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2월 05일
발 의 자: 이효원 의원(1명)
찬 성 자: 김규남, 김길영, 김원중,
문성호, 심미경, 윤영희,
이민석, 이상욱, 정지웅,
최진혁, 허·훈 의원(11
명)

1. 제안이유

- 문화재 등의 용어가 국가유산 등의 용어로 개편하는 내용의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개정되어 24년 5월 17일 시행 예정임.
- 이에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를 상위법 제·개정에 맞추어 ‘문화재’를 ‘국가유산’ 등의 용어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에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수정함.(안 제7조제2항).
- 나.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에 일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을’로 수정함.(안 제2조제1항제1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 구조문대비표(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체제 전환으로 문화재 등의 용어가 국가유산 등의 용어로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중 이에 관한 규정을 일괄하여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7조(공공건축 사업 건축계획의 내용) ① (생략)</p> <p>② 각급 기관의 장이 건축계획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도시, 공원 녹지, <u>문화재</u>, 재생, 지속가능성 등 관련분야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p>	<p>제7조(공공건축 사업 건축계획의 내용)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 <u>국가유산</u>-----</p> <p>-----</p> <p>-----</p> <p>-----.</p>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한다.</p> <p>2. (생략)</p> <p>② (생략)</p>	<p>제2조(정의) ① ----- -----.</p> <p>1. ----- ----- ----- ----- 「국 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을 ----- ----- -----.</p> <p>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률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같은 조례 용어를 관련 법률 용어와 일치하게 변경·신설한 안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추 계 분 석 관 이홍래

☎ 02-2180-7952

e-mail : hong1004@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